

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6] <신설 2025. 12. 19.>

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·배치 기준(제3조제3항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사무실

- 1)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- 2) 장애아동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3) 초기상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분리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- 4)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나. 상담실

- 1) 16.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,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- 2)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,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3) 장애아동과 가족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비대면으로 조기개입·상담·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노트북, 마이크, 카메라 및 스피커 등 화상회의 장비를 구비하고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.

다. 교육실

- 1) 16.5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, 직원,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- 2) 효과적인 교육진행을 위하여 집기 등의 설비·비품을 갖추어야 한다.

라. 진열대

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등의 보조공학기기 및 터치스크린 등 정보열람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진열하며, 장애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
2. 운영기준

가. 관리규정

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조직, 인사, 급여, 회계,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.

나. 장부 등의 비치

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- 1)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연혁에 관한 기록부
- 2)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
- 3)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 일지
- 4)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
- 5) 예산서 및 결산서
- 6) 총 계정원장 및 수입·지출 보조장부
- 7) 금전·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
- 8)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
- 9) 신고받거나 접수받은 장애아동의 조사·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

다. 회계

- 1)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- 2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3. 직원의 자격기준

가. 특수교사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

나. 사회복지사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

다. 전문인력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

- 1)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
- 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
- 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
- 4)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
- 5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

- 6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
- 7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- 8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
4. 직원의 배치기준

구분	역할	인원
센터장	센터 업무 총괄 관리	1명
조기개입 서비스	가. 장애영유아 및 가족 대상 정보제공 및 연계 나.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다. 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연계체계 구축 라. 가족지원서비스(양육코칭, 상담, 부모교육 등)	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원
맞춤형 통합지원	가. 장애아동 및 가족 대상 사례 발굴 나.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다. 발달재활서비스, 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사업, 부모교육 등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적 지원 라.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마.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바.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사. 장애아동의 사례관리	5명 이상
운영지원	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조직운영(회계, 행정, 인력 사무)	2명 이상